

붙임 전문위원회 기본자격 및 제척사유

① 기본자격

- 1)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
- 2)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- 3)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인 사람

② 제척사유

가.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

(단, 위원회를 운영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및 전문기관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공동 간사위원으로 전문위원회에 참석)

나.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1) 현재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 또는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대형 연구과제 책임자
- 2) 현재 부처의 정부연구개발사업 기획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
- 3) 현재 출연(연), 관리기관 등에서 본부장급 이상의 주요 보직자로 근무 중인 전문가
- 4) 현재 연구책임자로 수행 중인 정부연구개발과제가 4개 이상인 전문가

다.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

라.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, 불성실·불공정하다는 정부 및 관련기관의 평가를 받은 전문가

마. 전문위원으로 2회 이상 위촉받아 활동한 전문가

바.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

사.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

아.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

자. 공무원임용령 제4조2항7호에 따라 복수국적자 및 외국인

차. 그 밖에 예산 배분·조정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, 혹은 기본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